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

PRUGIO

특별공급 청약안내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청약 일정

구분	신청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2022.06.14.(화) ~2022.06.15.(수)	• 청약Home 인터넷 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모바일 앱에서 신청(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사업주체 견본주택 10:00 ~ 14:00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 허용 * 접수시 모든 구비서류 제출

▣ 주택형별 대상 세대

구분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복무군인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합계
84A	9	8	9	9	9	44
84B	4	5	4	4	5	22
84C	-	-	-	1	1	2
합 계	13	13	13	14	15	68

▣ 신청대상자 및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구 분	내 용
신청 자격 (각 항목 모두 충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특별공급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추천기관

구분	대상기관
국가유공자	충북북부보훈지청 보상과
장기복무제대군인	충북북부보훈지청 보상과
10년이상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장애인	충북도청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중소기업근로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단순 참고용으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청약홈 청약제도 안내, 관계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

PRUGIO

특별공급 청약안내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구비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

※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하여야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등 모든 항목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아래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의거, 당첨자 서류는 최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보관기간 : 입주자로 선정된 자 5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6개월 / 이후 파기)

구분	필수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공통 서류	○		신분증 사본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인 발급 기준 참조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부적격 소명자료		○	무주택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멸실·철거예정 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 자료